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7. 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8. 채우진 의원 외 7명

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4.

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22, 9, 27,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승수 의원

가. 제안이유

감염병의 예방과 보건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과 어린이의 보건위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 위 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안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모래장 내 잔류세균 ·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제2항제5호)
- 나.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제2항제6호)
- 다.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행위 제한 (안 제4조제1호, 제5호, 제6호)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조례 개정 배경

 본 개정조례안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및「서울특별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조례」에 근거한 어린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시설의 오염도 검사 및 시설 정기검사 등의 반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 전성 확보 차원의 제도적 조치를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시 모래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한 잔류세균과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과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데, 이는어린이 놀이시설에 감염병 예방 조치와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안 제4조제1호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차원으로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를 제한한 사항은 과도한 행정행위로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수거 행위 미준수시 출입제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 해 신설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각종 감염병 발생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사회적으로 관심 사항이 되고 있음.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판단됨.
- 현재 마포구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은 2022년 현재 399개에 이르고 있으며

소유 및 관리형태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관리 · 감독하고 있음.

<丑 1.	마포구	어린이놀이시설	현황	(2022.3.기준)>
-------	-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구분	주택과	공원 녹지과	여성 가 족 과	문화 예술과	위생과	서울시 한강사업 본부	아동 청년과	노인 장애인과	마포 중앙도서 관
399	279	60	48	3	3	3	1	1	1

- 아울러,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및 모래놀이공간 안전・위생관리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일상관리 및 일별 주단위로 어린이공원에만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.
- 금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-19 등의 감염병 발생과 개물림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과 반려견의 안전관리가 전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,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린이놀이시설내 각종 사고에 대하여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조치로서 긍정적으로 보임.
- 또한,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,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판단됨.
- 향후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공원에만 한정하여 실시하는 모래시설의 위생관리를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마포구만의위생・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 개정된 조례의 안전조치 사항이 구민에게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겠음.

[관계법령]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·감독 등)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51조(소독 의무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"소독"이라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

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9.26, 2019.12.31>
- 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- 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
- 3.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
- 4.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기 타 : 없 음